

경제 협력 방식의 성립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과정

김은정 _고베대학

목 차

- I. 머리말
- II. 1950년대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전략
- III. '회담 제2차 중단기'의 정치과정: 초기 한국 정책의 연속성
- IV. 경제 협력 방식의 성립
- V. 청구권 문제의 최종 타결과 외무성·대장성 간의 대립의 변용
- VI.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951년부터 약 14년에 걸쳐 전개된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이 1965년에 경제 협력 방식으로 타결되는 과정과, 경제 협력 방식의 정책적 기원을 일본정부 내의 정치 과정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 협력 방식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타결 요인을 미국의 압력이나 정치가의 타협의 산물로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본정부 내의 관료정치에 착목하여,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경제 협력 방식으로 타결된 요인을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는 2008년에 공개된 일본외무성사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한일회담 관련 연구에서 불투명했던 부분을 해명하고 보완함으로써, 한일회담의

史的인 전개를 실증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해방 후 일본의 한국외교의 본질과 현재의 한일관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주제어

경제협력방식, 상호포기+ α , 일본의 관료정치, 한일회담

.....

I . 머리말

해방 후의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 문화, 지역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긴밀히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발전되어 온 이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역사논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과거 식민지 지배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해결되지 못한 채 한일 양국 국민 간의 감정적 대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씨앗의 원인은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경제 협력 방식에 의해 타결되었기 때문이라고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청구권의 명목을 배제한 경제 협력 방식에 의한 문제 해결이,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죄 및 역사 청산의 기회를 눈감아 주고, 동시에 식민지 시대에 자행된 수많은 조선인의 희생을 역사 속에 묻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가 경제 협력 방식으로 타결된 요인을, 미국 변수 그리고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결탁의 산물로써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한일 회담과 관련된 1차 사료가 거의 미공개인 상태에서 쓰인 초기 연구들,¹⁾ 그리고 한일 회담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정부 간행 자료와 미국에서 공개되기 시작한 한일관계 관련 1차 사료가 사용 가능해진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²⁾에서, 공통되고 지배적이다.

즉, ‘냉전 논리’, ‘반공 논리’,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한미일 3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역사 논리’가 배제당하였으며, 가장 난문제였던 청구권 문제는 ‘미국의 개입’과 한일 양국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 경제 협력 방식으로 타결되었다고 해석하는

1) 高崎宗司, 山本剛士, 李庭植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이 연구들은 사료 부족으로 인하여 실증성은 떨어지지만, 한일회담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한 선구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高崎宗司, 『検証日韓会谈』, 岩波新書, 1996; 山本剛士, 『日韓関係—協力と対立の交渉史』, 教育社, 1978; 李庭植, 『戦後日韓関係史』, 中央公論社, 1989).

2) 太田修, 木宮正史, 金斗昇, 吉澤文寿, 李鍾元, 이원덕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은 한일회담을 국제 정치학적 관점 또는 일본의 대한국 외교 정책이라는 관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당시에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사용한 실증성을 담보로, 한일회담 관련 연구를 본격적인 외교사적 연구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약간 보충 설명을 하자면, 太田修와 吉澤文寿는 새롭게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추가로 분석하여 2015년에 연구 서적을 출판하였지만, 이 서적들은 기존에 출판한 연구서에 새로운 사료를 일부 추가 보충하여 쓰인 개정판이며, 기존의 논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이후에 장박진과 이종원 등이 새로운 사료를 기초로 하여 공표한 연구들과 같은 세대의 연구로 분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여전히 1990년대 이후 일련의 연구 성과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太田修,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新装新版』, クレイン, 2015; 木宮正史, 『韓国における内包的工業化戦略の挫折—5・16軍事政府の国家自律性の構造的限界』, 『法学志林』 第九一巻 第三号, 1994, 1~78쪽; 木宮正史, 『1960年代韓国における冷戦と経済開発—日韓国交正常とベトナム派兵を中心にして』, 『法学志林』 第九二巻 第四号, 1995, 1~116쪽; 金斗昇, 『池田勇人政権の対外政策と日韓交渉』, 明石書店, 2008;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新装新版), クレイン, 2015; 李鍾元, 『韓日会谈とアメリカ—『不介入政策』の成立を中心に』, 『国際政治』 第一〇五号, 1994a, 163~181쪽; 李鍾元, 『韓日国交正常化の成立とアメリカ—一九六〇~六五年』, 『年報近代日本研究』 第一六号, 1994b, 272~305쪽;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 1996)

경향이 강하다.

이후, 한일회담의 양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2005년에는 한국에서, 2008년에는 일본에서 전면 공개되었다. 여기에 힘입어 한일회담에 관한 실증성 높은 연구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사료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분석의 틀을 넘어 역사를 재해석하려는 시도와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박진희와 장박진은, 한국 측 외교 문서를 치밀히 분석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통해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의 연속성과 내제적 논리를 밝혔다. 이동준은 새로운 사료를 사용하여 기존에 연구상 공백이었던 한일 회담 중단기에 초점을 맞춰, 이 시기의 한미일 간 물밑 교섭을 사적(史的)으로 해명하였다. 이종원(李鍾元)은, 새롭게 공개된 사료를 토대로 한일 관계에 관한 미국의 영향을 강조했던 종래의 주장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즉,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과 외교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의 압력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한일 관계에 관한 미국의 중재 또한 한계가 있었음을 사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냈다.³⁾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을 포함한 선행 연구들에 있어서, 한일 간 청

3) 박진희,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선인, 2008; 장박진, 『식민지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논형, 2009; 장박진, 『미완의 청산』, 역사공간, 2014; 이동준, 「한일청구권교섭과 ‘미국해석’: 회담 ‘공백기’를 중심으로」, 『외교문서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1: 한일회담과 국제사회』, 선인, 2010, 39-70쪽; 李鍾元,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一)－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 『立教大学』 第七六号, 2009a, 1-33쪽; 李鍾元,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二)－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 『立教大学』 第七七号, 2009b, 109-140쪽; 李鍾元,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三)－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 『立教大学』 第七八号, 2010, 155-205쪽; 李鍾元, 「日韓会談の政治決着と米国－「大平・金メモ」への道程一」, 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 編,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 法政大学出版社, 2011, 83-114쪽.

구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 내의 동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⁴⁾ 그리고 여전히, 일본의 대한국 외교 전략은 역대 정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미국의 압력 및 정치가의 역량에 따라 변용되어 왔다는 ‘수동적 외교 전략’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얼핏, 경제 협력 방식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타결로 인해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여지를 제공하는 듯한 인상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고는 한일회담의 여러 의제 중에서 청구권 문제에 초점을 맞춰, 경제 협력 방식의 성립을 둘러싼 일본 정부 내의 정치과정을 해명한다. 그리하여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가 경제 협력 방식에 의해 타결된 결과를 주로 ‘미국의 개입’이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틀에서 설명해 온 종래의 해석에 도전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대한국 외교에 대한 본질을 밝히는 실증적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양국 간의 해석 차이와 논쟁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역사 인식을 재촉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혀 둔다.

4) 필자는 2015년에,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본질적인 인식과 일본의 대한 정책의 연속성에 초점에 맞춰 경제 협력 방식에 이르는 타결 과정을 통사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본고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대한 정책을 둘러싼 일본 정부 내의 정치과정을 외무성과 대장성 간의 대립과 정책수립 과정을 중심으로 해명하여, 경제 협력 방식은 일본 정부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정책 구상의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金恩貞, 「日韓會談中斷期, 對韓請求權主張撤回をめぐる日本政府の政策決定過程—初期對韓政策の変容と連続, 1953~57年—」, 『神戸法学雑誌』 第六四卷第三・四号, 2015a, 1~47쪽; 金恩貞, 「日韓會談請求權問題における日本政府の政策的連続性—『經濟協力方式』の起源と妥結—」, 『現代韓国朝鮮研究』 第一五号, 2015b, 17~29쪽)

Ⅱ . 1950년대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전략

1.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논리와 정부 내의 대한 강경론(對韓強硬論)

일본은 패전 직후부터 외무성 조약국을 중심으로, 대일 강화조약의 체결에 대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의 옛 점령지에 남겨진 재산의 처리와 연합국에 대한 배상 문제를 관련지어, 영토 할양 연구에 관한 국제법 학자인 나고야대학 법학부의 야마시타 야쓰오(山下康雄) 교수에게 이 연구를 위촉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리라 예상되는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야마시타의 연구는 1949년부터 51년 사이에 거의 완성되어, 외무성 내에서 정리되었고, 외무성에 의해 ‘야마시타 보고서’로 불려졌다.⁵⁾

‘야마시타 보고서’ 중에서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남한에 있는 옛 일본 재산(이하 ‘재한 일본 재산’)을 한국의 대일 청구권과 관련지으려는 명백한 의도 하에, 이 재산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한의 신탁통치를 담당할 주한미군 정부가 재한 일본 재산을 모두 몰수하기 위해 1945년 12월 6일 발효한 법령 ‘명령 33호’ 및 이 재산들이 한국에 양도된 법적 조치들을 ‘불법적’이라고 하는 법적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주장은 “일본도 한국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라는 역청구권의 주장으로 귀결되었다.⁶⁾

5) ‘야마시타 보고서’가 형성된 과정, 그 안에서 정리된 역청구권 주장을 위한 법적 논리에 관해서는 金恩貞,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日本政府の政策論理の原点—『對韓請求權論理』の形成を中心に—」, 『國際政治』 第一七二號, 2013에서 상세히 해명하였다.

그러나 한일 회담의 개시를 앞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청구권 교섭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무성과 대장성 간에는 법적 논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대장성은 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한국에 대한 청구권 지불을 회피하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철저한 법이론에 입각하여 주한 미군정에 의한 제한 일본 재산의 몰수와 한국에의 양도를 부정한다는 전제로 한국과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 대장성은 야마시타의 법적 논리를 앞세워 한일회담에 임하지는 강경론을 굽히지 않고, 정부 내의 강경론을 주도하였다.⁸⁾

여기에 비해 외무성은, 한일회담은 외교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청구권 교섭에서 지나친 법적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피하자고 하였다.⁹⁾ 눈에 띄는 것은, 외무성 아시아국이 대장성이 주도하는 정부 내의 대한 강경론에 가장 회의적이었다. 한국과의 교섭 과정에서 지나친 법적 논리를 전개하여 한국과의 대립을 초래하고 국교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한일 간 국교 정상화의 조기 달성을 바라는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일 교섭에서 한국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¹⁰⁾

더욱이 아시아국은, 한국과의 교섭의 성패는 패전 후 국제 사회에 복귀하려는 일본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하여,¹¹⁾ 한국

6) 金恩貞(2013), 32-33쪽.

7) アジア二課, 「請求権処理問題交渉に関して問題となる諸点」 1952.2.5,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청구 번호)-1564(문서 번호). 이하, 한일 회담과 관련한 일본 외무성의 문서는 같은 요령으로 표기한다.

8) アジア二課, 「請求権問題会談の初期段階における交渉要領(第二案)」 1952.2.1,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537; 「請求権問題に関する初期の交渉要領案(第三次案)」 1952.2.6,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537.

9) 栗野, 「請求権問題に関する大蔵省との打合せ」(1952년 추정),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538.

10) アジア局第二課, 「日韓交渉の現状」 1952.1.6,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632.

11) 亜五課, 「朝鮮問題(対朝鮮政策) 一, 平和条約の調印」 1956.2.21, 일본 외무성 문서,

과의 외교적 전개가 향후 동남아시아와의 외교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청구권 문제 때문에 한국과의 교섭이 난항 하여 국교 정상화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동남아시아 각 국과의 교섭에도 ‘정신적 및 정치적 영향’이 미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에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역청구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적 논리의 주장만으로 외교 교섭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 대장성의 태도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¹²⁾

반면에 외무성 조약국은, 외교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우선하는 외무성 내의 논리에는 이해를 보이면서도, 당시의 국제법상의 원칙론과 한국과의 법리 경쟁을 의식하여 아시아국과는 달리 대한 강경론의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대장성의 강경론은 결과적으로 조약국과 결탁하여 법적 논리를 더욱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정부 내의 강경론에 밀려 보강된 법적 논리도 한국의 법적 논리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되지 못하고 한계를 노정했다.¹³⁾

2. ‘상호 포기+α’안의 성립

1951년 10월부터 약 1달여간 한일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기간을 전후하여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를 상호 일괄 포기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¹⁴⁾ 이 구상은 역청구권의 주장과 야마시타 보고서의 법적 논리를 함의(含意)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호 일괄 포기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 상쇄를 의미하는지,

2006-588-67.

12) 三条, 「第二条による分離地域に係る請求権の処理方式」 1952.2.7,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567.

13) 金恩貞(2013), 35~39쪽.

14) 壘二, 「財産, 請求権処理に関する件」 1951.12.10,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536.

상호 포기를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상쇄 방식은 한일 간에 청구액을 서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의해 어느 쪽이 다른 한쪽에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며, 상호 포기 방식은 청구액의 차액을 묻지 않고 서로 포기하는 방식이다.¹⁵⁾

당시 일본 정부는 재한 일본 재산이 한국의 대일 청구액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상쇄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에 지불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한반도에 거주하다가 패전 후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재산이 남겨진 일본인 인양자들의 사유 재산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었다.¹⁶⁾ 따라서 상호 포기 방식을 채용하면, 인양자들의 사유 재산을 국가가 전후 배상을 목적으로 포기하게 되었다는 반발을 사, 인양자들의 사유 재산에 대한 국가 보상을 야기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 정부 내의 강경론자들은 상쇄 방식을 염두에 두고 상호 일괄 포기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¹⁷⁾

1952년 2월 15일 제1차 한일회담이 개시되었다. 3월 6일의 제5회 청구권 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단은 한국에 대해 역청구권을 주장한다. 일본

15) '상쇄'와 '상호 포기' 방식은 얼핏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두 방식에 따른 청구권 문제의 해결 결과나 한일 양국 정부의 정책적 귀결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점에 관한 고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두 방식이 근본적으로는 같으며 단지 표현의 차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관한 선행 문헌의 고찰의 공백을 메우고, 이 두 방식에 따라 일본 정부의 청구권 교섭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해 고찰한 것으로는 金恩貞, 「1950年代初期, 日本の対韓請求權交渉案の形成過程—『相互放棄プラスアルファ』案の形成を中心に—」, 『アジア研究』第六二卷 第一号, 2016이 유일하다.

16) 사실, 일본 정부에 있어서 한국과의 청구권 교섭은 인양자들의 사유 재산에 관한 국가 보상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지면상 이 문제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으나, 초기 한일회담 시기에 인양자들의 사유 재산에 관한 국가 보상 문제가 일본의 청구권 교섭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金恩貞(2013; 2016)를 참조하면 좋다.

17) 金恩貞(2016), 10~11쪽.

의 주장은, 조선 식민지 통지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시기에 형성된 일본 재산을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보는 한국 측의 주장과 대립하는 것이었고, 한국의 큰 반발을 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며 끝내 회담이 결렬된다.

제1차 한일회담이 한일 양측의 법적 공방 끝에 결렬되자, 외무성 아시아국은 법적 논리만을 쟁점으로 하는 교섭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의 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미 아시아국은 한일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역청구권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된 야마시타 법이론의 논리적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고 있었고,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이 불러 올 한국의 반발과 회담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¹⁸⁾

제1차 한일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1952년 4월부터 이듬해인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이 시작되기까지 약 1년간의 회담 제1차 중단기에,¹⁹⁾ 외무성 내에서는 아시아국의 주도로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졌다. 아시아국은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을 정당화하면서도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법적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한일 간의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하며,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피해서 한국에 대한 약간의 지불을 인정하자는 상호 포기+α안을 구상했다. 조약국도 외교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외무성의 일원으로서 아시아국의 구상에 수긍하였다.²⁰⁾

이에 대해 대장성은, 외무성의 안이 한국에 대한 청구권 지불뿐만 아니라 인양자들의 사유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야기시켜 재정 악화를

18) 金恩貞(2013), 33~35쪽.

19)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이 시기에 실은 일본 정부 내에서 중요한 한국 정책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논문을 통하여 밝혀냈다(金恩貞, 2016).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는 의미로 '회담 제1차 중단기'로 정의하고, 한편 기존에 중단기, 공백기로 불렀던 1953년 10월부터 58년 4월까지를 '회담 제2차 중단기'로 재정의한다.

20) 「日韓会谈再開の基本条件について」 1953.1.23,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045.

초래한다고 우려하여, 엄격한 법적 논리에 입각하여 교섭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²¹⁾

그러나 외교면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 문제만을 강조하여 대한 교섭 강경론을 주장하는 대장성의 태도는, 이 시기 일본 정부 내에서 “대장성의 태도가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을 방해 한다”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제3차 한일회담이 시작될 무렵인 1953년 10월 초, 대장성은 외무성의 정책 구상인 상호 포기+ α 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대장성의 수용으로 상호 포기+ α 안은 외무성내의 정책 구상에 머물지 않고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안으로 수렴되었다.²²⁾

Ⅲ. ‘회담 제2차 중단기’의 정치과정: 초기 한국 정책의 연속성

그러나, 제3차 한일회담 개시에 즈음하여 일본 정부 내에서 일단 합의를 본 상호 포기+ α 안은, 동 회담에서 한국 측에 제안(提言)되지 못하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그대로 묻히게 된다. 1953년 10월 제3차 한일회담이 시작되자마자 과거의 조선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고 미화한 일본 대표단의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수석 대표의 발언(이하, ‘구보타 발언’)이 문제가 되어 동 회담이 단기간에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촉발된 한일 간의 격렬한 역사 공방 때문에 청구권에 관한 구체적인 교섭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1958년 4월에 제4차 한일회담으로서 교섭이 재개되기까지

21) 「朝鮮關係懸案例」 1952.8.21,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042.

22) 대장성이 외무성의 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金恩貞(2016), 19-20쪽에서 고찰하고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약 4년 반 동안의 회담 제2차 중단기에 한국과 일본 간의 공식 회담은 없었다. 하지만 외무성의 주도하에 회담 재개를 위한 한일 간, 일미 간, 한미일 간의 비공식 접촉은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은 공식 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일본이 역청구권의 주장과 구보타 발언을 동시에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외무성은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우선 제3차 한일회담이 결렬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구보타 발언의 철회 의사를 시사했다. 그러나 대장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 내의 대한 강경론자들이 한국과의 회담 재개 자체에 반대하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도 한국의 이승만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구보타 발언 철회에 대한 일본 정부 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²³⁾

1954년 12월 10일 요시다 정권의 퇴진으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정권이 성립했다. 하토야마는 정권 수립 초기에 요시다 전 정권의 대미 외교 일변도 정책 및 한국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승만과의 정상 회담까지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한일회담 재개의 의사를 피력했다. 이러한 하토야마 정권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한국은 한일회담 재개와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외무성도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주일 한국 대표부와 비공식 토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일본의 역청구권 포기라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본이 역청구권의 주장과 구보타 발언을 동시에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단 외무성은, 일본만이 역청구권과 그 대상인 재한 일본 재산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한국도 한국이 취득한 재한 일본 재산을 감안하여 일본에 청구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호 포기+ α 구상을 한국 측에 던지시 흘리고 있었다. 즉, 일본이 역청구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한국도 어느 정도의 대

23) 金恩貞(2015a), 15~16쪽.

일 청구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는 상호 포기의 구상을 끄집어낸 것이었다. 한국 대표부는 우선은 한일회담이 재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외무성의 제안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일본과의 비공식 토의를 이어갔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양국 간의 회담 재개 분위기는 얼마 가지 않아 깨지게 된다. 하토야마 정권은 요시다 전 정권의 대미 일변도인 외교 정책에 반(反)하여 공산주의 국가와의 외교 관계 회복을 정권 제일의 외교 정책 목표로 제창하고 있었고, 한반도에서도 적대적 분단 상태인 남한과 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시사했다. 그래서 한국과의 한일회담 재개를 도모하는 한편에서는 북한 정권과 접촉하고 북일 무역 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한 접근이 발각되고 한국은 하토야마가 남북한에 대한 이중 외교를 전개한다고 비난하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외무성은 하토야마 정권의 공산권 국가에 대한 외교 전략에는 찬성하였지만, 북한과의 접촉은 한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한 접근에 대한 진의를 따지는 주일 한국 대표부에 대하여, 한국이 북일 간의 접촉에 반발한다면 일본은 당연히 이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한 접근은 기정사실화 되고, 한일 양국 정부는 상호 불신을 확인하며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토의는 중단되고 말았다.²⁵⁾

그 후 한일관계는, 1956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세가 변화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개선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1956년 5월 15일 치러진 대통령·부통령 선거의 결과, 대통령에는 여당의 이승만이 재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는 야당의 장면이 당선되어, 여당에 의한 독점적 의사결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장면은 여당 및 이승만 대

24) 위의 글, 17~19쪽.

25) 위의 글, 19~23쪽.

통령의 대일정책을 비난하고, 일본과 정식적인 외교 관계를 열어 피폐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마리를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서 얻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장면 부대통령의 태도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 내에 그가 등장한 것을 호의적으로 보았다.²⁶⁾

일본에서는 1957년 2월에 성립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정권이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피력했다. 당시 많은 일본 어선이 평화선을 침범하여 한국에 나포되어 있었고, 나포된 일본인 어부들은 부산의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이 억류된 어부들의 대부분은 야마구치현(山口県) 출신이었다. 기시의 정치적 고향이 야마구치현이었으므로, 기시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도 절박한 정치적 과제였다. 기시는 부산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의 석방을 위해 한국과 교섭하기 위해서라도 한일회담의 재개가 필요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국교가 재개되기에 앞서 우선 억류된 어부들의 석방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둘러 해결하자고 제안했다.²⁷⁾

일본인 어부 억류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는 기시의 정치적 계산과,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국과의 조속한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외무성 간의 의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시와 외무성은 한일회담의 재개를 서두르려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

외무성은 기시 수상에게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일회담 및 억류자 문제에 관한 교섭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며,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보타 발언의 철회뿐만 아니라 역청구권의 주장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회담을 원활히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내적으로 인양자들의 사유 재산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시는 이러한 외무성의 진언을 받아들여, 구보타

26) 「対日接近を子想せしめる諸因」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687.

27) 「岸大臣金公使会谈の件」 1957.1.10,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682.

발언과 역청구권의 주장을 동시에 철회한다고 선언하는 한편, 인양자 급 부금 지급 법안을 제정하였다.²⁸⁾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및 구보타 발언의 동시 철회는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회담 재개 합의 의사록에 천명되고, 한국과 일본은 1953년 10월 이후에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을 1958년 3월에 동경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²⁹⁾

한편, 외무성은 기시 정권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국내 논쟁을 수습하기 위하여 정부 내의 이견 조정에 나섰다. 외무성 조약국과 법무성은 역청구권 주장 철회가 가져올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한일회담 재개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였다.³⁰⁾

문제는 대장성이었다. 외무성은 대장성의 반발과 우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설득하였다. ①역청구권 주장의 철회는 일본의 일방적인 청구권 철회로 맺지 않고 실질적인 상호 포기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종래의 일본정부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³¹⁾ ②대장성이 주장하는 상쇄 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일본 정부 내에서 이 이상 의견 조정이 늦어진다면 정치적 해결을 앞세운 정치가가 한국에 대한 더 큰 양보를 결단할 우려가 있다. ③앞으로 한국과의 청구권 교섭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액 문제가 될 것이며, 한국의 청구권을 '0'으로 하지 않고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³²⁾

대장성은 이러한 외무성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28) 金恩貞(2015a), 33쪽.

29) 「共同発表」(1957년 12월 추정),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69.

30) 条三, 「国家の部分的承継における公債務の問題－日韓問題について」 1957.7.23,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594.

31) 「日韓交渉に関する関係各省次官會議議事要旨」 1957.6.15, 일본 외무성 문서, 9506-588-1519.

32) ア一課, 「日韓交渉に関する関係各省次官會議議事要旨」 1957.9.6,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523.

과의 정식 회담에서 청구권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역 청구권의 주장 철회에 동의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은 역청구권의 주장을 철회하여 표면적으로는 종래의 한국 정책에서 크게 양보한 듯 보이지만, 내부적인 토의에서는 실질적인 상호 포기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액수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에 대한 청구권의 지불을 전제로 하여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외무성이 회담 제1차 중단기 때부터 구상하였던 상호 포기+ α 안이, 기시 정권 아래서 다시금 등장하였고 기시의 정치적 계산과 어우러져 정부 내의 대한 교섭 전략으로 결착하게 된 것이다.³³⁾

즉 기시 정권의 역청구권 주장 철회라는 정치적 결단은,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기시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나 미국의 압력에 의한 전격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외무성이 기시의 정치적 결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정책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실현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IV. 경제 협력 방식의 성립

1. 대한(對韓) 경제 협력의 구상

제4차 한일회담은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철회를 전제로 개시되었지만, 이 시기 한일 간에는 제일 조선·한국인의 ‘복송’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여 청구권에 관한 교섭은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였다. 일본은 역청구권의 주장 철회를 정식으로 이행하지 않고, 제4차 한일회담은 실질적 성과 없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다.

33) 金恩貞(2015a), 38~41쪽.

회답이 고착 상태에 빠진 와중인 1960년 4월 19일, 한국에서는 여당의 부정 선거에 대한 반발로 학생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하고 장면 총리를 실질적인 행정 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서 한국에 신정권이 성립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7월에는 일본에서도 정권이 교체되었다. 안보투쟁으로 인하여 야기된 국내의 정치적 혼란에 책임을 지고 기시 정권이 물러나자, 경제 발전을 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정권이 성립하였다.

장면 정권은 주일 한국 대표부와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일회담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고, 한국의 장 정권과 일본의 이케다 정권 사이에서 제5차 한일회담이 개시되었다. 외무성은 한국의 장면 정권을 친일적인 정권으로 보고 있었고, 이전부터 장면이 피폐한 한국 경제의 재건을 우선하여 일본에 접근하는 것을 반겼다.³⁴⁾ 그리고 외무성은 당시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상에게, 한국의 장면 정권과는 청구권이라는 명목에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일본이 한국 경제의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청구권 문제를 경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³⁵⁾

장면 정권과의 회담 재개를 앞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일회담과 관련된 각 부처의 실무자가 모여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청구권 문제와 경제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방책이 외무성과 대장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 시기의 외무성과 대장성 양성 간의 의견 절충과 합의의 과정은 그대로 일본 정부 내의 대한 교섭에 관한 정책 방침으로 이어졌다.

이때, '한국 측이 외무성 아시아국을 통하여 6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을 요구했다'라는 정보가 흘러나왔다. 대장성은 이 금액의 출현에 놀라

34) 「対日接近を予想せしめる諸因」(1960년 추정),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687.

35) アジア局, 「小坂大臣のソウルにおける記者会見想定問答」 1960.9.3,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509.

며 “6억 달러의 절반도 생각할 수 없다”³⁶⁾고 단언하고,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피력했다.

①피 징용자, 옛 조선 총독부의 조선인 관료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연금, 개인의 채권 등을 순수한 청구권으로서 인정하고, 그 외 한국이 주장하는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³⁷⁾ ②경제 협력은 일본 수출입 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의 변제 능력이나 미국의 보증을 확보한다. ③한국의 변제 능력이 ‘제로’라면 통상적인 경제 협력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경제 원조의 방식으로 한다. ④명시적인 약속이 아닌 밀약으로도 좋으니, 한국이 미지불 연금과 같은 항목 이외의 청구권을 일체 포기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원조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요컨대, 무상 원조의 전제 조건은 한국이 개인 청구권 이외의 청구권 일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일본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 일반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³⁸⁾

외무성은 이러한 대장성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다. ①경제 협력 및 경제 원조는 실질적인 상호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다.³⁹⁾ ②처음부터 청구권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회답에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일단 청구권 위원회를 열어 청구권에 관한 논의는 해야 한다. ③대장성의 희망대로 미지불 급여나 징용 노동자에 대한 급부금에 관한 사무적 토의는 진행하겠지만,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해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⁴⁰⁾

36) 北東アジア課, 「一般請求権問題に関する件」 1960.12.13,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96.

37) 北東アジア課, 「第5次日韓會談に対する日本側基本方針決定のための第1回各省代表打合せ議概要」 1960.9.12,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408.

38) 北東アジア課, 「第5次日韓會談に臨む日本側態度決定のための第2回各省代表打合せ議概要」 1960.9.19,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408.

39) 北東アジア課, 「日韓會談準備のための省内打合せに関する件」 1960.10.6,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408.

여기에 덧붙여서 외무성은, 현재 한국의 장면 정권은 이승만 정권과 달리 한일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의 논쟁을 피하고 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과의 교섭은 청구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적인 논의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⁴¹⁾

일본 정부 내에서 한일회담 타결에 관한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1961년 4월 20일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문제 간담회가 설치되었다. 이 간담회는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서 국회의원을 한국에 파견하였는데, 이때 외무성의 이세키 유우지로(伊関佑二郎) 아시아 국장이 동행 파견되었다.⁴²⁾ 이세키는 귀국 후 한국 출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앞으로의 한일 간 교섭은 청구권의 명목보다는 금액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며 “관건은 결국 일본이 한국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개인 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청구권 5천만 달러, 무상 경제 원조 2억 5천만 달러, 유상 경제 협력 2억 5천만 달러”로 하여, 총액 5억에서 6억 달러로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⁴³⁾

이 총액에 대해 이세키는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의 1년분이 2억 수천만 달러이므로 일본이 여기에도 못 미치는 숫자를 제안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이 비공식적으로 5억 달러는 받아야겠다고 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⁴⁴⁾ 이세키는 한일 간에 물밑 접촉을 통하여 어느 정도 드러난 한국

40) 北東アジア課, 「第5次日韓会談に臨む日本側態度決定のための第3回各省代表打合せ會議概要」 1960.10.14,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408.

41) 北東アジア課, 「日韓会談日本側代表の打合せ會議概要」 1961.1.31, 일본 외무성 문서, 9506-588-1411.

42) 「自民党政務調査会外交調査会日韓問題懇談会メンバー」 1961.4.26,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514.

43) 「(付)伊関局長の所見, 考え方および指示事項(五月一日)」(1960년 5월 15일 추정), 일본 외무성 문서, 9506-588-517.

측의 희망 금액 5~6억 달러⁴⁵⁾를 총액으로 하고, 대장성과 논의했던 ‘개인 청구권, 무상 경제 원조, 수출입 은행을 통한 정부 차관’ 등의 형식을 참고로 하여 동 구상을 제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한 의원단과 이세키가 귀국한 4일 후인 1961년 5월 16일, 한국에서는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발생, 한일회담은 또다시 중단된다.

2. 경제 협력에 관한 외무성과 이케다 수상의 엇갈린 인식

한국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은 박정희 군사 정권의 적극적인 회담 재개 요청과 회담 타결 의지의 천명으로 인해 1961년 10월 제6차 한일회담으로서 재개된다. 그리고 그해 11월, 한국 군사 정권의 박정희 의장은 미국을 방문하는 도중 일본에 들러 이케다 수상과 회담을 갖기로 한다.

이케다와 박정희의 회담을 앞두고 외무성은, 한국 군사 정권의 최대의 관심은 경제 재건을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이 회

44) 伊関佑二郎, 「日韓交渉の回顧」 1969.12.3,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81. 이세키는 “아시아국 관계자가 한국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5~6억 달러를 요구 받았다고 한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45) 한국 외교 문서를 분석한 유의상에 의하면, 5차 회담 시기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 언론에서는 청구권 금액이 6~7억 달러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으나, 한국 외교 문서에는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청구권 금액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장박진도 이에 관하여 한국 외교 문서를 검토하였는데, 1961년의 자민당 국회의원단 방한 시 한국 측 정부 관계자가 청구권으로서 5억 불을 요구했다고 이세키 국장이 회솔했다고 한다. 장박진은 한국의 장면 정권이 청구권 금액으로 5~6억 달러를 비공식적으로 주장했다고 추정하고, 한국 측이 왜 5억 불을 주장했는가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역사공간, 2016; 장박진,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1호, 2008, 226~227쪽)

답의 주요 의제는 청구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⁴⁶⁾ 이케다 수상은 이 점에 주의하여, 박정희에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개인의 청구권만을 청구권으로 지급하며, 무상 원조보다는 장기 저리 차관의 형식으로 대한 경제 협력을 한다고 말하였다.⁴⁷⁾

이 회담 후 이케다는 이세키 아시아 국장에게 “청구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그 내역을 밝히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대부분 유상 경제 협력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에 박정희가 동의했다고 말하며, 박정희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다고 자평했다.⁴⁸⁾

그러나 ‘박·이케다’ 회담 결과에 관한 이케다의 자평에 대해 외무성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외무성은 우선, 개인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이케다와 박정희의 생각이 동상이몽이었다고 우려했다. 박정희는 청구권 문제에 관한 상세한 지식이 없어 애초부터 법적 근거에 의한 개인 청구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박정희는 법적 근거가 있는 개인 청구권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이 점을 이케다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⁴⁹⁾

무상 원조에 관해서도, “박정희가 무상 원조를 분명히 포기했다”라고 이해한 이케다와는 달리, 외무성은, 박정희가 청구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과한데다 일본으로부터 받을 경제 협력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러한 박정희의 태도를 보고 박정희가 청구권의 명목을 포기하고 경제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석하는 이케다의 판단은 지나

46) 北東アジア課, 「第六次日韓會談再開に関する日本側打合せ」 1961.8.29,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418.

47) 아주과, 「2-2 정상회담 및 활동상황」(소제목) 대한외교 문서, 786(등록번호),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일본 방문, 1961.11.11-12』(문서제목). 이하, 한일회담 관련 한국 외교 문서는 같은 요령으로 표기함.

48) 北東アジア課, 「池田, 朴會談後の事態における日韓會談の進め方(伊関局長指示事項)」 1961.11.13,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971.

49) 「第一七八回外交政策企画委員会記録」 1961.11.15,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368.

치게 낙관적이라고 우려했다.⁵⁰⁾

외무성은 이케다 수상에게, 한국과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절충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왔다고 진언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정치적 논의의 상대로서 기시 전 수상을 한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외무성은 한국 측이 친한파로 인식하고 있는 기시의 방한을 허락하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한국 측이 희망하는 인물과 방식으로 정치적인 절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기시의 방한과 기시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지지하였다.⁵¹⁾

3. 청구권 총액을 둘러싼 외무성과 대장성의 대립

외무성과 대장성은 일단 청구권이라는 명목으로 한국과의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에 합의하고, 한국에 지불할 순수한 청구권 명목을 개인 청구권에 한정하는 것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그리고 군인, 군속, 피 징용자들에 대한 위로금과 연금 지급 등 개인 청구권에 관한 사무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성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개인 청구권의 총액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⁵²⁾

외무성은 청구권의 금액을 한국이 원하는 선에 가깝게 결정지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⁵³⁾ 당시 한일회담 대표단 사이의 공식 회담에서 한국 측이 대일 청구권으로서 요구한 금액은 7억 달러에서 12억 달러까지 주

50) 北東アジア課, 「池田首相・ライシャワー大使会谈要旨」 1962.1.5,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795.

51) アジア局長, 「日韓会谈今後の選び方に関する件」 1961.12.27,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420.

52) アジア局, 「韓国側対日請求額に対する大蔵, 外務両省による査定相違について」 1962.2.15, 일본 외무성 문서, 9506-588-1749.

53) 「第一七八回外交政策企画委員会記録」 1961.11.15,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368.

장의 폭이 넓었다. 하지만 외무성은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서 아시아국에 전달된 5~6억 달러를 참조하여, 청구권을 함의(含意)하는 무상 원조로서 1억~2억 달러, 유상 경제 협력으로서 2억 달러,⁵⁴⁾ 총액은 최저 4억 달러를 염두에 두고 교섭을 한다면, 한국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⁵⁵⁾

그러나 대장성은 법률의 적용을 엄격히 따지자면 순수한 개인 청구권의 명목으로 지불 가능한 금액은 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대장성은 그 이유에 대해, 태평양 전쟁 등에 일본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였던 조선인이 현재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그들에게 현재의 일본 실정법에 근거하여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⁵⁶⁾

대장성이 제시한 청구권 명목의 천만 달러는, 무상 원조를 넓은 의미의 청구권으로 하여 최소 1억 달러는 허용하지는 외무성의 견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외무성은 이러한 대장성의 주장이 또다시 한일 간에 법률 논쟁이나 역사 논쟁을 촉발한다고 지적하고, 대장성의 제시액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였다.⁵⁷⁾

외무성은 청구권 금액에 관해서 우선 대장성과 의견 절충을 한 후, 이케다 수상의 재가를 얻어서 한국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짓는다는 구상을 세웠다. 외무성은 한국이 청구권이라는 명목보다 총액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판단으로 총액을 정해야 한다고 이케다

54) アジア局長, 「日韓会談の今後の進め方について」 1962.1.16,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333.

55) 参議院外務委員会調査室, 「日韓基本条約及び諸協定等に関する参考資料」 1965.10,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647.

56) アジア局, 「韓国側対日請求額に対する大蔵, 外務両省による査定の相違について」 1962.2.15, 일본 외무성 문서, 앞의 문서.

57) 北東アジア課, 「請求権に関する一般的問題点」 1961.2.6,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349; 北東アジア課, 「請求権問題に関する大蔵省との打合せ」(第一回~五回), 1961.2.7-3.13,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350.

를 설득하였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대장성이 제시하는 총액이 너무나 소액이므로, 이러한 소액을 가지고 정치적 절충에 임한다고 한들 그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케다 수상은 대장성과 비슷한 금액을 말하며 외무성의 1억 달러 주장을 허가하지 않았다.⁵⁸⁾

이케다는 대장성 관료 출신으로서 요시다 내각에서는 대장성 대신을 지내기도 하였고, 1952년 한일회담 초기에 국회 답변에서는 재정 문제를 우려하여 인양자들의 사유 재산에 대한 국가 보상에 대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반대하였던 경력이 있다.⁵⁹⁾ 이러한 이케다는 외교적 측면의 고려나 정치적 절충을 강조하는 외무성의 견해에 항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무성은 이케다 수상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청구권 금액에 관한 대장성과의 조율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했다.⁶⁰⁾

한편 이 시기에, 미국의 케네디 정권은 한일회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금액 교섭에 관해서 라이샤워 주일 미국 대사와 버거 주한 미국 대사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⁶¹⁾ 특히, 청구권을 둘러싼 일본 정부 내의 의견 조정 과정에서 외무성과 이케다·대장성 간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못하자 라이샤워는 일본 정부 내의 의견 조정도 시도하고 있었다.

외무성은 라이샤워 대사에게 무상 원조를 청구권으로 간주하고 최대 2억 달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기시 전 수상의 방한과 그에 의한 청구권 금액의 정치적 절충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전하였다. 라이샤워는 이러한 외무성의 견해를 갖고 이케다 수상의 의향을 타진하였으나, 이케다 수

58) 北東アジア課, 「日韓會談の進め方に関する勉強会の状況要点」 1962.1.9,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333.

59) 「第一二国会衆参両院の平和条約及び安保条約特別委員会における答弁抜粋」(1951년 11월 추정),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047.

60) アジア局長, 「日韓會談の今後の進め方について」 1962.1.16,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333.

61) 李鍾元(2010).

상은 외무성이 생각하고 있는 청구권 금액뿐만 아니라, 기시가 한일 간의 청구권 협상에 정치적 절충을 위한 교섭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극히 회피하고 반대하였다.⁶²⁾

라이샤워 대사는 이케다 수상에게, 미국은 한국의 대일 청구액으로 소문이 돌던 8억~12억 달러설을 5억 달러 이하로 하도록 강하게 설득하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도 이 선에서 타결할 것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청구권의 총액을 5억 달러 선으로 한다는 안에 일본이 동의한다면 그중 일부를 청구권 명목으로 하고, 또한 이 문제를 어업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⁶³⁾

라이샤워가 제시한 이 금액은 아시아국에서 상정하고 있던 최저 4억 달러 선과 매우 가까운 금액이었다. 라이샤워는 이케다와 대장성이 제시한 금액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외무성의 구상을 현실적이라고 보고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엇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에 외무성은 이케다와 대장성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미국의 중개를 적절히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V. 청구권 문제의 최종 타결과 외무성·대장성 간의 대립의 변용

1962년 11월 한국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신임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간에 청구권 문제를 '무상 원조 3억 달러, 유상 경

62) 北東アジア課, 「池田首相・ライシャワー大使会谈要旨」 1962.1.5,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795.

63) 北東アジア課, 「池田首相, ライシャワー大使会谈等に関する米大使館員の内話の件」 1962.1.5,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796.

제 협력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 이상'의 틀로 하여 경제 협력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김·오히라' 합의가 성립되었다.

일본은 민간 차관을 제외하고 총 5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한국은 민간 차관을 포함한 6억 달러가 청구권의 총액이라고 선전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각 국내 사정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었지만, 제5차 한일 회담 시기 때부터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되었던 무상 원조와 유상 경제 협력의 방식, 그리고 총액 5~6억 달러로써 김·오히라 회담이 합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후,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를 검토하기 위해, 1963년 1월부터 외무성의 각 부처별로 방한단을 만들어 한국의 정세를 파악한다.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방한단의 대부분의 견해는, 한국의 야당이 한일 회담의 타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대한 경제 협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자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⁶⁴⁾

대장성과 통산성은, 외무성의 낙관론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성급한 경제 협력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한일회담의 타결이 가시적으로 된 시기인 만큼 대장성과 통산성의 태도가 오히려 한일회담의 타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외무성의 적극적인 회담 타결 추진은 탄력 있게 진행되었다.⁶⁵⁾

하지만, 일본에서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것과 반대로 한국 국내에서는 야당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점점 격렬히 진행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한일회담은 중단되고, 청구권 문제의 정치적 함의를 이끌어낸 김종필은 1963년 2월에 국내의 격렬

64) 經濟協力課長 沢木正男, 「大韓民國出張報告書」 1963.1.19,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295.

65) 經濟協力局經濟協力課, 「對韓民間經濟協力の推進につき關係各省の協議に関する件」 1963.1.28,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888.

한 비판과 반대 데모의 표적이 되어 잠시 정계를 떠나는 사태로 이어졌다.

1964년 한국 국내의 정치상황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박정희 정권은 국내의 피폐한 경제 상황으로 악화된 민심과 반일 여론을 완화하여 한일 회담 재개에 연결시킨다는 명목으로, 청구권과는 별도 문제로 일본에 긴급 차관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무성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천만 달러 규모의 연지불 차관을 제공한다고 하였다.⁶⁶⁾ 그 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한 2천만 달러의 차관을 요구하자, 외무성은 이를 수락하고 중단된 한일회담을 조속히 매듭지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⁶⁷⁾

외무성은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한국에 대한 원조를 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의 긴급 차관을 허가하자고 역설하였다. 더욱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다른 외국보다 술선하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장성은 한국에 대한 이번 긴급 차관이 김·오히라 합의의 틀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청구권의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였으나, 이 긴급 차관은 정부 내 부처 간 논의에서 사실상 합의되었다.⁶⁸⁾

이 긴급 차관 문제는, 제3차 이케다 내각이 위기에 놓이자 이케다 정권은 국내 정치상 위험 요소가 많은 한일문제에 더욱 소극적이 되어 허가를 미루는데, 이케다 정권 퇴진 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정권이 성립하자마자 1964년 12월에 실현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은 김·오히라 합

66) 外務省, 「韓国に対する援助問題(改定案)」 1964.6.20,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908.

67) 經濟部アジア課・經濟協力局經濟協力課, 「韓国援助問題に関する韓国側要望内容」 1964.6.25,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908.

68) 北東アジア課, 「対韓商品奨助問題に関し外相の大蔵大臣に対する申入れ要領(案)」 1964.8.15,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908.

의인 이른바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 경제 협력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 이상'에서 증액을 요구하게 되고, 청구권 문제는 '무상 원조 3억 달러, 유상 경제 협력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 이상'으로 최종 합의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구권 증액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민간 차관 부분에서만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한일 양국의 국내사정을 고려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즉 일본 입장에서는 '무상 원조 3억 달러, 유상 경제 협력 2억 달러'의 총액 5억 달러만이 청구권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외무성은 이것이 청구권의 실질적인 증액이 아니라는 점을 대장성에게 강조할 수 있었다.⁶⁹⁾ 한편 한국은 민간 차관을 포함한 총액을 국내에 제시하여 왔으므로, 표면적으로는 8억 달러의 청구권 금액을 받아냈다는 선전이 가능했다.⁷⁰⁾

이렇게 한일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3월 말에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나서, 한일 간에 다른 현안도 타결되고, 이 해 6월에 한일 국교 정상화 기본 조약과 여기에 관련된 부속 협정이 체결된다.

여기서 고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 내의 정치 과정에서 부처 간 대립이 이전의 양상에서 변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 '대장성의 재정 논리' 대 '외무성의 외교 논리'라는 대립의 구조는 이전과 같다. 그러나 양성이 청구권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에서 균열을 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 협력 방식이라는 같은 전제 아래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접근시켜가는 논의로 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무성은, 재정적인 규율을 중시하는 대장성의 강경론 또는 소극론을 설득하면서, 한국과 합의

69) 北東アジア課, 「椎名大臣・李長官會談録」 1965.3.11,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728; 「椎名大臣とライシャワー大使との會談」 1965.3.22, 일본 외무성 문서, 2006-588-1692.

70) 기미야 타다시는, 이 청구권 금액 증액에 대해서 한국의 대일 교섭 능력의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한다(木宮正史, 2011).

가능한 경제 협력 방식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VI. 맺음말

본고는 경제 협력 방식의 성립을 둘러싼 일본 정부 내의 정치과정을 사적(史的)으로 풀어가며, 일본의 대한국 외교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을 실증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방대한 시기를 짧은 원고에 담으려다 보니 한일회담과 관련된 미국의 개입,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 당시의 국제정세, 일본 역대 정권의 한국 인식 등에 관한 고찰을 최대한 배제하고,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중요한 액터였던 외무성과 대장성의 대립을 분석의 축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때문에, 이 논고만을 읽었을 때에는 마치 경제 협력 방식의 성립을 둘러싼 주도권은 일본에 있었으며, 그 방식의 구상 또한 일본 외무성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일회담과 관련된 미국 및 국제 정세의 동향이나 한국 입장에서의 분석 등, 이 논문에서 논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문헌들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동시에, 기존의 논고들과 이 논고를 대조하며 검토 고찰함으로써 한일 외교사나 한일 관계사에 관한 새롭고 다양한 해석의 틀이 제공되기를 바란다.

어찌 되었든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역청구권 주장 및 청구권의 상쇄’ → ‘상호 포기+ α ’ →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 (=일본의 일방적인 청구권 포기)’ → ‘경제 협력 방식(=한국의 청구권 명목의 포기+ α 만의 합의)’로 변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정책 변환의 이면에는 외무성의 초기 구상이 일관되게 함의(含意)되어 있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초기 한일회담 시기에 일본 외무성의 구상으로

형성된 청구권 교섭에 관한 전략 및 정책은, 한일회담 14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⁷¹⁾들을 거치면서, 경제 협력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한일회담에 관한 일본의 태도가 선행 연구에서 논하여져 온 것처럼 수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 바꿔 말하면, 경제 협력 방식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타결이 일본의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구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일관계의 정체나 식민지 통치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 치유에 관하여 일본은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6년 11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16년 11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16년 12월 10일

71)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들이란, 앞서 말한 한일회담과 관련된 미국의 개입,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 당시의 국제 정세, 일본 역대 정권의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이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구조적 요인들로 작용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들을 지면상 본고에서 다 검토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여기에 관련된 논의는 다른 논고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1차 사료>

정보공개법에 의한 일본 외무성 공개 문서

2007년, 2006-588

2008년, 2006-588

2013년, 9506-588

한국외교사료관 소장 한일회담 관련 외교 문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일본 방문, 1961.11.11-12』 등록
번호 786.

<단행본>

박진희, 『한일회담 :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선
인, 2008.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역사
공간, 2016.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 1996.

장박진, 『식민지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논형, 2009.

장박진, 『미완의 청산』, 역사공간, 2014.

太田修,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新装新版』, クレイン, 2015.

金斗昇, 『池田勇人政権の対外政策と日韓交渉』, 明石書店, 2008.

高崎宗司, 『検証日韓会談』, 岩波新書, 1996.

山本剛士, 『日韓関係-協力と対立の交渉史』, 教育社, 1978.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る』, クレイン, 2015.

李庭植, 『戦後日韓関係史』, 中央公論社, 1989.

<논문>

빅터 차, 「1965년 한일수교 협정체결에 대한 현실주의적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Vol.25, No.1, 1997.

이동준, 「한일청구권교섭과 '미국해석: 회담 '공백기'를 중심으로」, 『외교문
서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1: 한일회담과 국제사회』, 선인, 2010.

- 장박진,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1호, 2008.
- 木宮正史, 「韓国における内包的工業化戦略の挫折－5・16軍事政府の国家自律性の構造的限界」, 『法学志林』 第九一卷第三号, 1994.
- 木宮正史, 「1960年代韓国における冷戦と經濟開發－日韓外交正常とベトナム派兵を中心にして」, 『法学志林』 第九二卷第四号, 1995.
- 木宮正史, 「韓国の対日導入資金の最大化と最適化」, 李鍾元・木宮正史・淺野豊美 編, 『歴史としての日韓外交正常化 I』, 法政大学出版局, 2011.
- 金恩貞, 「日韓外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日本政府の政策論理の原点－『対韓請求権論理』の形成を中心に－」, 『国際政治』 第一七二号, 2013.
- 金恩貞, 「日韓会談中絶期, 対韓請求権主張撤回をめぐる日本政府の政策決定過程－初期対韓政策の変容と連続, 1953~57年－」, 『神戸法学雑誌』 第六四卷第三・四号, 2015a.
- 金恩貞, 「日韓会談請求権問題における日本政府の政策的連続性－『經濟協力方式』の起源と妥結－」, 『現代韓国朝鮮研究』 第一五号, 2015b.
- 金恩貞, 「1950年代初期, 日本の対韓請求権交渉案の形成過程－『相互放棄プラスアルファ』案の形成を中心に－」, 『アジア研究』 第六二卷 第一号, 2016.
- 李鍾元, 「韓日会談とアメリカ－『不介入政策』の成立を中心に」, 『国際政治』 第一〇五号, 1994a.
- 李鍾元, 「韓日外交正常化の成立とアメリカ－一九六〇~六五年」 『年報近代日本研究』 第一六号, 1994b.
- 李鍾元,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一)－朴正熙軍事政権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 『立教大学』 第七六号, 2009a.
- 李鍾元,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二)－朴正熙軍事政権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 『立教大学』 第七七号, 2009b.
- 李鍾元,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会談とアメリカ(三)－朴正熙軍事政権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 『立教大学』 第七八号, 2010.
- 李鍾元, 「日韓会談の政治決着と米国－「大平・金メモ」への道程－」, 李鍾元・木宮正史・淺野豊美 編 『歴史としての日韓外交正常化 I』, 法政大学出版局, 2011.

Abstract

Japan's Political Process Surrounding the Form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Method

Eun-Jung Kim

This paper examines the negotiation process regarding the claim issue at Korea - Japan talks that had been developed for 14 years since 1951, namely the claim settl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in 1965 and its policy origins, focusing o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Existing studies tend to explain the claim issue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method as a product of the United States' pressure or a mere political compromise. On the contrary, this paper focuses on the bureaucratic politics withi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analyzes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method from a perspective distinctive from existing interpret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ocuments that were released in 2008, and empirically reinterprets the history of the Korea - Japan talks by explaining and complementing unclear dimensions in previous research.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 new framework of analysis to review the nature of Japanese diplomacy after Korea's liberation and the problems of current Korea-Japan relations.

Key words

Economic Cooperation Method, Mutual abandonment + α , Politics of Japanese bureaucracy, Korea-Japan talks